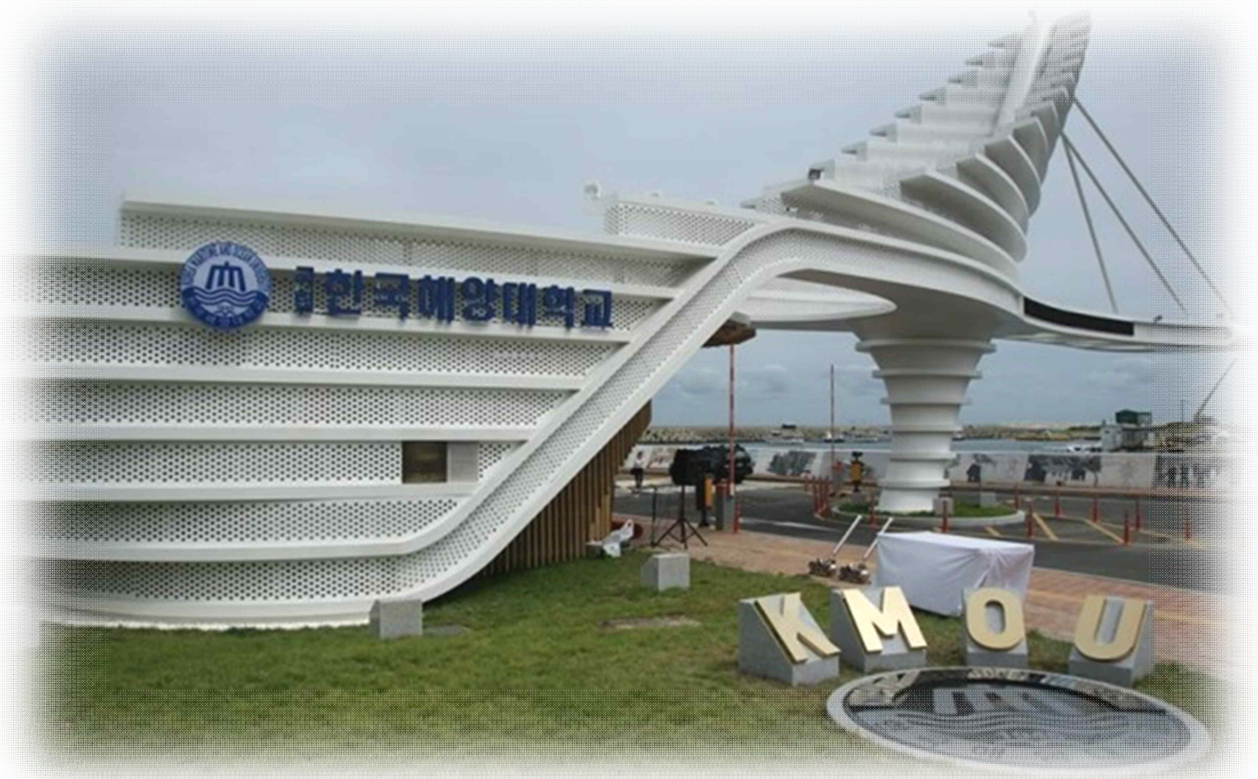


202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NATIONAL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202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2021. 4.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NATIONAL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목 차

I . 입학전형 일정	1
II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2
III . 자격기준	3
IV . 지원대상별 제출서류	5
V . 전형요소 및 선발방법	6
VI . 면접고사	6
VII . 원서접수	7
VIII . 지원자 유의사항	8

※ 붙임 : 각종 서식 및 별표

I. 입학전형 일정

구 분			전형 일시	장 소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21. 7. 5.(월) 09:00 ~ 7. 9.(금) 18:00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www.kmou.ac.kr)	▪인터넷으로만 접수
구비서류 제출			2021. 7. 5.(월) 09:00 ~ 7. 14.(수) 18:00	입학장학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기한 내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지원 자격심사 결과 발표			2021. 8. 17.(화) 10:00 예정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www.kmou.ac.kr)	▪개별 통지하지 않음
고사장 안내			2021. 8. 20.(금) 10:00 ~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www.kmou.ac.kr)	▪개별 통지하지 않음
면접			2021. 8. 27.(금) 14:00 예정	고사장은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합격자 발표			2021. 9. 14.(화) 10:00 예정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www.kmou.ac.kr)	▪개별 통지하지 않음
합격자 등록			2021. 12. 17.(금) 09:00 ~ 12. 20.(월) 16:00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www.kmou.ac.kr) “등록 안내” 참조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www.kmou.ac.kr) 로그인 후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 버튼 클릭 ▪개별 통지하지 않음 ※ 기존의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방식을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방식으로 변경 ▪ 공지된 기간 내에 “합격자 온 라인 문서 등록” 을 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됨
총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차	발표	2021. 12. 21.(화) 10:00		
		등록	2021. 12. 22.(수) 16:00까지		
	2차	발표	2021. 12. 23.(목) 10:00		
		등록	2021. 12. 23.(목) 16:00까지		
	최종	발표	2021. 12. 24.(금) 10:00		
		등록	2021. 12. 27.(월) 16:00까지		
등록금 납부			2022. 2. 9.(수) ~ 2. 11.(금)	전국 농협 (단위농협 포함)	▪은행 업무시간 내 납부

※ 위의 일정은 우리 대학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 모든 사항은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www.kmou.ac.kr)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므로 지원자는 공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II.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1. 재외국민

가. 모집인원 : 입학정원의 2%범위 내 선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나. 모집인원 범위

계열구분	모집인원	소속대학	모집 단위
자 연	10명	해사대학	항해융합학부(17) 기관시스템공학부(17) 해양경찰학부 항해전공(3) 해양경찰학부 기관전공(3) 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6)
	12명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	조선해양시스템공학전공(4) 해양공학전공(2) 에너지자원공학전공(3) 공간디자인전공건축방재공학전공(4) 해양환경학전공(2) 해양생물공학전공수산바이오공학전공(3)
			기계시스템공학전공(4) 냉동공조공학전공(3) 해양신소재융합공학과(3) 전기전자공학전공(3) 전자통신공학전공(3) 나노반도체공학전공(2) 전파융합공학전공(3) 데이터사이언스전공(2) 지능제어시스템공학전공(2) IT융합전공(2) 물류시스템공학전공(3) 환경공학전공(2) 건설공학전공(2)
인문사회	5명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해운경영전공(2) 해양정보·금융전공(2) 국제무역전공(2) 경제전공(2) 법학전공해사법전공(4) 국제관계학전공(3) 해양행정학전공(2) 해양영어영문학전공(2) 동아시아문화전공(2)
합 계	27명		

※ ()안의 숫자는 모집 단위별 최대 선발가능 인원이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임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학생정원 조정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함

다. 지원유형 : 재외국민 전형

1) 영주교포 자녀

- 해외근무자(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기타 재외국민(자영업, 현지회사근무, 외국유학연수자, 해외 선교활동) 자녀

2. 외국의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가. 모집인원 : 인원제한 없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7호】

나. 모집단위 : 전 모집단위 (해양스포츠과학과 제외)

다. 지원유형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III. 자격 기준

1. 지원 자격 : 다음 지원구분별 세부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022.02.28.까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어야 함]

□ 1유형 : 재외국민(입학정원 2%이내 모집)

지원 유형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 / 체류기간 (단위 : 년)				비 고
구 분		학 생		보 호 자	배 우 자			
		재 학		체 류	근 무	체 류		
재 외 국 민	영주교포 자녀		- 학생 재학기간 : 외국소재의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이수한 자 - 학생 :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체류 - 부모 :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체류 - 보호자 재직기간 : 역년 3년(1,095일) 이상으로 해외에서 재직한 자 ※ 학생의 재학기간과 보호자(파견 당사자)의 해외근무기간이 중첩 되어야 함	3	학기 개시일로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전일 (약 365일) 까지 각각의 1개년의 3/4 이상	3	학기 개시일로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전일 (약 365일) 까지 각각의 1개년의 2/3 이상	연 속 · 비 연 속 관 계 없 음
	해외근무자 자녀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근무자 국제기구 근무자		3		3		
	유치과학자/교수요원 자녀			3		3		
	기타 재외국민 자녀	자영업자 현직회사근무자 외국유학연수자 해외 선교활동		3		3		

□ 2유형 : 외국의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입학정원 제한 없음)

구 분	지원 자격	비 고
전 교육과정 이수자	해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재학기간의 인정기준 및 보호자의 근무기간, 체류 및 영주기간 인정기준

- 해외 고교졸업자의 경우 : 근무 및 체류 기간은 원서 접수 마감일(2021. 7. 9.)기준으로 계산함
- 해외 고교졸업예정자의 경우 : 졸업 시점까지 재학한 것으로 보며, 보호자(근무, 체류) 및 배우자(체류)의 지원 자격서류는 졸업일까지 기간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제출일 별도 통지)

2. 지원 자격 세부사항

가. 영주교포 자녀의 인정기준

- 1)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1,095일) 이상 영주교포로 체류한 자
-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영주권이 없는 국가임을 확인)의 경우 중·고교과정에서 5년 이상 재학한 자

나. 해외근무자

- 1)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2) 상사직원의 범위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다)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라)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를 포함)의 임직원
 - 마)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 3) 해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단, 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3국 소재 학교를 예외적으로 인정함)

4)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다. 해외 재학기간 인정 기준

- 1)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제외)에 재학한 기간만 인정함
- 2) 학제 차이로 인해 국내 수학기간과 외국 수학기간이 중복되었을 경우 또는 해외에서 동일한 학년이나 학기를 중복 이수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까지만 지원 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함
- 3)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4)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5)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라. 해외 체류일수 인정 기준

-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3) 보호자가 근무국에 실제 체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으로 인정함

마.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1)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가)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며,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다)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2)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바. 기타 사항

- 기타 체류기간, 재학기간 등 인정에 관한 사항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대학교 지원 자격 서류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IV. 지원대상별 제출서류

모집 구분	전형 유형		제출서류	추가서류
재외 국민 (1 유형)	영주교포 자녀		1)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 2)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3)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4) 초·중·고 재학증명서 5) 초·중·고 전 과정 성적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주1) 7)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8)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9) 여권사본(부모, 학생) 10)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11)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주2) (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12)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13)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14)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주3) 15) 선원건강진단서(*해사대학 지원자에 한함) 16)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소지자에 한함)	*해사대학 지원자는 선원건강진단서 제출 [서식5] 참조 *영주교포 자녀: 영주권 사본(부모, 학생) *상사직원: 해외지사 등의 설치인증 허가서 사본 *(주4) *유치과학자, 교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자영업자, 법인: 외국 정부 발급 사업자등록증 *유학, 연구, 출장: 사실증명서
	해외 근무자 자녀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근무자 국제기구 근무자		
	유치과학자/교수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 자녀	자영업자 현지회사근무자 외국유학연수자 해외 선교활동		
전 교육과정 이수자 (2 유형)			1)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 2)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3)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4) 초·중·고 재학증명서 5) 초·중·고 전 과정 성적증명서 6) 출입국사실증명서 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8) 신분증 사본 9)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소지자에 한함)	*해사대학 지원자는 선원건강진단서 제출 [서식5] 참조
북한이탈주민 (2 유형)			1)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 2)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3)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4)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학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6)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소지자에 한함)	*해사대학 지원자는 선원건강진단서 제출 [서식5] 참조

- *(주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외국민 표기가 된 주민등록등본(등본에 가족 모두 없는 경우에도 증명서 제출)
부모가 이혼(사망)한 경우 또는 개명하였을 경우 해당 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주2) 재직(경력)증명서상 해외 파견(근무)기간이 연월일까지 명시되어야 하며, 재직(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국 법인(지사/공장)명은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에 나오는 법인(지사/공장)명과 일치되어야 함 (재직기관의 본사 인사권자 발행)
- *(주3) 세금납부사실증명서는 외국정부기관 발급서류만 인정되며 비과세 사실증명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 *(주4)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해외지사(사무소) 설치인증서는 반드시 본사나 외국환은행의 원본대조필이 있어야 하며, 복사본은 인정하지 아니함. 또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는 파견(근무)기간 이전에 수리신고된 것이어야 함. 예를 들어, 재직증명서상 파견기간이 “2021년 4월 1일 ~ 현재(계속)” 이라면,
신고수리일이 “2021년 3월 ○○일” 인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의 서류가 필요함 ※ 제출서류 미비의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음

【교육부 대입정책과 개정사항 안내】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V. 전형요소 및 선발방법

1. 전형요소

계 열 구 분	전형요소(면접)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가산점	비 고
전 계열	100점	5점 이내	

2. 가산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별 가산점 부여(성적표 제출 시 부여)

- 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유효
- 나. 4급 이상부터 등급에 따라 차등반영(최대 5점)

3. 선발방법

- 가. 면접고사의 평가기준은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점을 부여함
- 나. 면접고사 점수는 각 단과대학별 면접고사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여 채점하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각 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평점을 부여함
- 다. 면접에 불참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 라. 합격자 선발기준
 - 1) 면접고사 점수가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가산점을 합산하여 선발
 ※ 면접고사 점수가 60점 미만자는 가산점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2)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기준 성적 이상 취득자 중 고득점 성적순위(가산점 포함)에 따라 선발함
 - 3) 해사대학 지원자의 경우 선원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선원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VI. 면접고사

- 1. 일 시 : 2021. 8. 27.(금) 14:00 예정
- 2. 면접고사장 및 대기장소 : [홈페이지 별도 공지]
- 3. 수험생 준비물 :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4. 면접고사 배점기준 (1, 2유형 공통)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인 성	리더십 및 공동체 의식	25	
	자기극복의지	15	
전공적합성	전공관련 기초지식	20	
	전공에의 열정	20	
발전가능성	학업계획 및 미래설계	20	
합 계		100점	

VII. 원서접수

1. 접수 절차 : 원서접수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게시 예정

가. 접수 시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집요강 및 유의사항(pop-up창의 메시지 등)”을 숙지한 후 원서를 작성하고, 원서접수는 전형료 결제가 이루어진 후에 완료됨

나.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기한 2021. 7. 14.(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안내】

- 우리 대학교는 대학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
 - 지원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생부 자료 등
 - 학교정보: 최종학력,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고교 FAX번호 등
 - 기타: 추가 연락처 등
-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 입학, 장학, 학사, 통계 업무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함

제공받는 곳		제공정보	목적
한국해양대학교	학사과, 재정과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학적생성, 학력조회, 장학생선발 등
	학생복지과, 학부(과)	성명, 연락처 등	OT, 입학식 안내
	생활관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성적 등	생활관생 선발, 기타 안내
	평생교육원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어학강좌 프로그램 안내
제3자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성명, 주민번호, 지원내용 등	위반자 조회 등

- 합격자(등록자)의 개인정보는 학사정보, 취업정보, 학술정보, 공학인증, 학교 홈페이지 회원정보, 웹메일 사용자 정보, 웹디스크 사용자 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 정보로 활용함

2. 전형료

가. 전형료 내역

구 분	전 형 료				접수 수수료
	일반관리비 (1단계)	면접고사료 (2단계)	감면액	계	
전 모집단위 (북한이탈주민 제외)	34,000원	20,000원	-	54,000원	우리 대학교에서 부담
북한이탈주민	34,000원	20,000원	54,000원	0원	

※ 전형료는 원서접수 대행업체 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전형료 환불

- 1) 1단계 불합격자에게 면접고사료 20,000원을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함
- 2) 1단계 합격자가 면접고사에 결시하는 경우는 면접고사료를 환불하지 않음
- 3) 천재지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을 환불함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
- 4)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의하여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입학전형 응시자에게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 예정임(추후 상세내역은 홈페이지 공고)

VIII 지원자 유의사항

1. 모든 지원자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하여야 함
2. 원서접수 후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모집단위 또는 지원유형 등을 변경할 수 없음
3. 원서접수 시 지원자 및 보호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입학전형 기간 중 등록 등에 대하여 신속히 연락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4.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사본일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원본대조필을 받아 공증 후 제출**),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문 번역본을 **공증을 받아 첨부**해야 하며, 공증은 해당 문서가 발급된 국가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제출서류가 우편 배달사고 등의 사유로 제출 마감일까지 도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우리 대학교가 책임지지 아니하며,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원본 서류 반환 요구 시에는 우표를 붙인 회송용 봉투를 함께 보내야 함
6. 외국학교 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면제)
7.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합격통지서, 합격자 유의사항, 등록금납부고지서는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www.kmou.ac.kr)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함
9. 신입생은 입학년도의 1학기 중에는 휴학할 수 없음(단, 병역의무 수행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
10. 입학 후라도 서류검증 등을 통하여 서류위조 및 허위사실, 주요사항 누락 등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 및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11. 우리 대학교 및 타 대학에서 “10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우리 대학교에 입학할 수 없음
12. 해사대학 입학예정자는 일정기간 승선생활 적응교육을 받아야 함
13. 면접 당일 지원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14. 입학전형과 관련한 변경 및 추가 사항 등 모든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으며,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kmou.ac.kr>)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함
15.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16.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대학본부 1층 학생처 내 입학장학과
(우편번호 49112)

○ 전화번호 : (051) 410-4776~4779, FAX : (051) 405-0509

〈대학입학 전형 지원방법 위반자 처리 사항〉

1. 타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의 수시모집 전형을 포함하여 **최대 6개 이내**의 전형에 지원 가능하며, 6개 전형이란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함 (“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함)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처리 됨

2.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총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됨

3.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확인예치금 납부 및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포함)수시모집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1개 대학 외 나머지 대학의 등록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4.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총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우리 대학교 등록포기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함

<서식 1>

2022학년도 한국해양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원서

지 원 사 항	1유형(재외국민) : 영주교포 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현지법인 직원 자녀□ 자영업자 자녀□ 해외유학 연수자 자녀□ 해외 선교활동□										
	2유형 : 외국의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 ※ 해당란 ☑에 체크(1유형은 해당란에 모두 체크)										
유 형 구 분	□ 1유형 □ 2유형										
지 원 자	성 명	한 글				한 자				사 진 (3.5cm×4.5cm)	
		영 문									
	주 민 등 록 호					국 적					
	지 원 모 집 위 단	대 학				학 부(과)					
	출 신 고 교	년 월 일				고등학교(졸업예정□, 졸업□)					
연 락 처	연 락 번 호	*가능한 연락번호 모두 기재 바람 (※국내 주소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며, 연락처의 불명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주 소					지원자 E-mail					
보 호 자	부	성 명						국 적			
		직 장 명				직 위			연 락 처		
		외 국 인 사 항	(시민권 번호)		(시민권 취득일)		년 월 일				
		교 포 사 항	(영주국)		(영주권 번호)		(최초 출국일)		년 월 일		
	모	성 명						국 적			
		직 장 명				직 위			연 락 처		
		외 국 인 사 항	(시민권 번호)		(시민권 취득일)		년 월 일				
		교 포 사 항	(영주국)		(영주권 번호)		(최초 출국일)		년 월 일		
서류심사 탈락시 전형료 환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서명)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수험번호	※			

※ 유형구분 : 1유형(입학 정원의 2% 이내 모집대상자), 2유형(입학 정원의 제한이 없는 모집대상자)

※ 원서접수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APPLICATION TICKET

(수 험 표)

202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Number (수험번호)	※
Name (성 명)	
College (지원대학)	대학
Division (Department) [지원학부(과)]	학부(과)
PHOTO (사 진) (3.5cm×4.5cm)	

한 국 해 양 대 학 교

※ 주의사항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에 접속하여 다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1 >

종 합 기 록 표

수험번호() 모집단위: 대학 학부(과) 성명 ()

지 원 유 형										
①영주교포 자녀	②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③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	④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⑤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⑥자영업자 자녀	⑦현지회사 직원 자녀	⑧해외유학연수자 자녀	⑨해외 선교활동	⑩전교육과정이수자	⑪북한이탈주민 자녀

□ 지원자 학력사항 기재(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순서에 의해 수학한 모든 학교를 기재)

학 교 명	재학기간		학교소재지		해당하는 학년, 학기에 줄(<----->)로 표시																	
	기 간	재학년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재학기간		년 개월	외국 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 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교포 학생 기재란		영주국() 영주권번호()		최초 출국일(년 월 일)					최종 귀국일(년 월 일)													

이상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지원자: 2021. .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2〉

종합 기록 표

수험번호() 모집단위: 대학 학부(학과) 성명 ()

☐ 보호자 외국 체류기간 기재(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에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기재)

구 분	외국 체류기간		소재지		보호자의 외국 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학년. 학기에 줄(<----->)로 표시																							
	기 간	체류년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 성 명 ()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계	년 개월																										
모(母) 성 명 ()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계	년 개월																										
교포 기재란(부)	영주국()	영주권번호()	최초 출국일 (년 월 일)		최종 귀국일(년 월 일)																							
교포 기재란(모)	영주국()	영주권번호()	최초 출국일 (년 월 일)		최종 귀국일(년 월 일)																							

이상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지원자: _____ 2021. 보호자: _____ (서명 또는 날인)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작성시 유의 사항>

1.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는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므로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에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1)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2) 수학 · 과학 ·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수학토너먼트,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 경시대회(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 작성 불가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

5.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에는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의 경우 작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6.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 본인은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유의 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 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

○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

성명 :

<공통문항>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4. 해당 학과를 선택하게 된 지원동기를 기술하고, 입학 후 학업계획과 졸업 후 진로 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서식 4>

건 강 진 단 서 CERTIFICATE OF MEDICAL EXAMINATION				
신청인 (Applicants)	성 명(Name)		성 별(Sex)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건강진단결과 (Results)	신 장(Height)	cm	혈 압(Blood Pressure)	
	체 중(Weight)	kg	혈 액 형(Blood Type)	
	청 력(Hearing)	좌LT : 우RT :	시 력(Visual acuity)	좌LT : 우RT :
	색 각(Colour Vision)		흉 위(Circumference of Chest)	cm
	혈액/조혈계 (Blood disorders)		감염병(Infections)	
	정 신 계 (Mental disorders)		피 부 질 환 (Skin disorders)	
	순 환 계 (Cardiovascular system)		신 경 계 (Nervous system)	
	생 식 및 비 뇨 계 (Genito-urinary conditions)		소 화 계 (Digestive system)	
	당뇨(Diabetes)		간장(Liver)	
	호흡계 및 흉부X선검사 (Respiratory disorders & Chest-X Ray)			
	특수건강진단에 한함 (Special Examination Only)		빈 혈(Anemia)	
		소변 및 매독(Urine and Syphilis)		
건강진단서 (Declaration of the recognized medical practitioner)	검사 시 피검사자 신분 확인 여부(Confirmation that identification documents were checked at the point of examination)			[]예(Yes) []아니오(No)
	청력 충족 여부(Hearing meets the standards in the section A-1/9?)			[]예(Yes) []아니오(No)
	보조기 미착용시 청력 충족 여부(Unaided Hearing satisfactory?)			[]예(Yes) []아니오(No)
	시력 충족 여부(Visual acuity meets the standards in the section A-1/9?)			[]예(Yes) []아니오(No)
	색각 충족 여부(Colour Vision meets the standards in the section A-1/9?)			[]예(Yes) []아니오(No)
	최근 색각검사일(Date of last colour vision test) 년 월 일			
	경계업무 적합성(Fit for lookout duties)			[]예(Yes) []아니오(No)
	건강에 제한이나 제약사항이 있는가?(Any limitations or restrictions on fitness?)			[]예(Yes) []아니오(No)
	제한이나 제약사항 기술(If "Yes", specify limitations or restrictions)			
	선원이 승선 이후 승무가 부진하게 되거나 타인의 건강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는 증상이 있는가?(Is the seafarer suffering from any medical condition likely to be aggravated by service at sea or to render the seafarer unfit for such service or to endanger the health of other persons on board?)			[]예(Yes) []아니오(No)
건강진단 실시일(Date of Exam)			년 월 일	
유효기간만료일(Date of Expiry)			년 월 일	
선원의 서명 (Seafarer's signature)		검사 의사명 및 서명 (Name and Signature of Examinee)		
본인은 이 진단서의 내용과 STCW 협약 A-1/9조 제6항에 따라 진단서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I have been informed the content of the certificate and of the right to review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of section A-1/9 of the STCW Code)				
「선원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STCW 협약과 해사노동협약의 관계 기준을 충족하였기에 이 건강진단서를 발급합니다.(It is issued, under the article 54-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eafarers' Act, to meet the requirements of both the 1978 STCW Convention as amended an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발급일(Date of Issue) : 년 월 일 발급 의료기관명(Official name of issuing Authority) 직인(Stamp) (전화번호)				
※ 수험번호 및 지원학부(과) 기재요		수험번호	지원학부(과)	

※ 비 고

- ① 한 항목이라도 빠짐없이 검진을 받아야 하며, 공인된 전문의의 선언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② 검사 의사명 및 서명란에는 의사의 성명 기재 후 반드시 서명함
- ③ 발급 의료기관명에는 의료기관명 기재 후 반드시 날인함
- ④ 건강진단서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및 발급분에 한함
⇒ 검진 후 진단서 발급 소요기간이 최대 7일 이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전 검진 완료 권장
- 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각 지방 해양수산청에 신고된 특수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건강진단서 국외 발급자는 공증 받은 경우만 인정)
- ⑥ **각 지방청에 신고 되지 않은 의원 및 보건소는 불가함**
⇒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정보 공지사항 참조

【별표1】

해사대학 지원자 건강진단 판정기준

【관련규정: 선원법 시행규칙 53조 제4항】

검사 항목		판 정 기 준
시력		■ 항해융합학부, 해양경찰학부(항해전공), 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는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5 이상 ■ 기관시스템공학부, 해양경찰학부(기관전공)은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시력을 통합한 교정시력이 0.4 이상일 것
체격		심한 신체의 박약, 심한 흉곽발육의 불량 그 밖에 선박내의 노동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 폐, 늑막, 심장 또는 신장의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을 것
청력		항해융합학부, 해양경찰학부(항해전공), 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는 두 귀 모두, 기관시스템공학부, 해양경찰학부(기관전공)은 한 귀 이상이 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속삭임을 청취할 수 있을 것. 다만, 선원으로서의 종사경력에 비추어 관련 직무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색각		적, 청, 황, 녹의 구분이 가능할 것(색각 안경 등 교정기구 사용 가능)
운동기능		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손가락·손·팔뚝 또는 신체 각 부위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결손이 없을 것. 다만, 장애의 정도가 경증이거나 보조기를 착용한 경우에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병후쇠약		병후의 쇠약에 따라 일정기간내의 승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혈당		공복시 125 mg/dl 이하일 것
간장	SGOT	50 IU/L 이하일 것
	SGPT	45 IU/L이하일 것
C.B.C (빈혈)	RBC	4.2~6.3
	Hb	남자 12.0 이상, 여자 10.0 이상
	Hct	36.0~52.0
	MCV	79.0~96.0
	MCH	26.0~33.0
	MCHC	32.0~37.0
	WBC	4.0~10.0
RPR(VDRL) (매독검사)		
소변검사		
※ 비고 (1) 검진 의사는 정상기준치 및 질병의 경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2) 위 표의 검사항목 중 시력과 관련하여 두 눈 중 최소한 한쪽 눈의 경우에는 안구질환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